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6-81호

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건설부고시 제31호(1976.8.21.)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1호(2006.01.12.)로 「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」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5호(2024.02.01.)로 「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아파트지구)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」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46호(2024.03.21.)로 「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(변경)」 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66호(2024.02.01.) 「도시관리계획(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」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52호(2024.09.26.) 「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(변경),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·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」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36호(2025.05.01.)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-143호(2025.09.04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여의도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21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위치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원
 - 면적: 33,418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: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(대표자: 정희선)
 - 주 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, 제일빌딩 711호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6.05.19.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 수 (층)	높이 (m)	용 도
26,869.50	13,319.03	49.57	222,450.05	469.99	지하5층/ 지상49층	173.44	4개동 912세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, 근리생활시설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 대상	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													상가 면적 (㎡)
	계	59A	59B	79A	79B	84A	84B	84C	94A	110A	134A	134B	180PA	
계	912	81	84	84	84	82	84	84	84	81	81	81	2	3,807.44
토지 등소 유자	575	20	14	12	19	78	79	84	84	81	51	51	2	-
보류 시설	5	-	-	-	-	1	2	-	-	-	1	1	-	-
일반 분양	186	2	11	58	51	3	3	-	-	-	29	29	-	3,807.44
임대	146	59	59	14	14	-	-	-	-	-	-	-	-	-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- 신설 : 도로 5,333.8㎡
- 폐지 : 도로 1,719㎡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: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완료 후로부터 약 8개월 이내
(2027년 5월 ~ 2027년 12월)

6. 기타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재건축사업과에 비치(☎02-2670-3572)